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0. 16 선고 2023가단87958 판결 [계약금반환 청구의 소]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철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이상동

변 론 종 결 2024. 8. 21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. 12. 2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가 2020. 12. 23. 피고와 사이에 “기술 및 컨설팅(영업)자문 계약(이하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자문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, 위 자문료는 피고가 수의계약을 수주해 오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, 피고가 수의계약을 수주하지 못할 시에는 지급받은 5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로 수의계약을 수주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유효기간을 2020. 12. 23.부터 2021. 12. 31.까지로 정하면서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, 단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 통지가 있을 시에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23. 12. 1.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23. 12. 31. 종료하였고, 피고가 계약 종료시까지 수의계약을 수주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자문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. 12. 2.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#### 가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행으로 우선 C 복합단지의 시행사 대표이사인 D을 원고측에 소개시켜 준 후 위 시행사의 설계 담당 팀장과 피고 및 원고측은 지속적으로 커튼월 영업을 진행하였고, 위 복합단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의 커튼월 영업은 성사를 앞두고 있었는데, 원고는 2022. 9. 1. 원고측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할 수

없다면서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.

이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, 피고는 위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#### 나. 판 단

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. 한편 여기서 말하는 ‘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’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.

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을 기존의 커튼월 영업에서 가전 영업으로 변경하는 제안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한편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이 있으나,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, 결국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3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한철